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Gwa-ik Wonjong Gongsin-Nokgwon*

송 일 기(Il-Gie Song)***
진 나 영(Na-Young Jin)***

목 차

1. 緒 論	3.2 體制 分析
2. 『佐翼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現存本	4. 『佐翼原從功臣錄券』의 內容 分析
2.1 頒賜事由	4.1 等級別 分析
2.2 現存本 現況	4.2 身分別 分析
3. 『佐翼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5. 結 論
3.1 形態 分析	〈附錄〉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影

초 록

『좌익원종공신녹권(佐翼原從功臣錄券)』은 세조가 1458년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좌익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 4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보고,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신분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좌익원종공신녹권』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인한 금속활자본이며,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295개의 직함에 모두 2,356명(1등 80명, 2등 846명, 3등 1,430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문관이 무관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반 2,265명, 중인 71명, 천인 11명, 양인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이 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BSTRACT

Gwa-ik Wonjong Gongsin-Nokgwon(佐翼原從功臣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made Se-jo into Chosun dynasty's king.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existing 4 books of *Gwa-ik Wonjong Gongsin-Nokgwon*, which were to analyze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As the result, *Gwa-ik Wonjong Gongsin-Nokgwon* is the metal typologic book which was made up Choju-Gapin(初鑄甲寅) letter type. The structure of the *Gwa-ik Wonjong Gongsin-Nok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卷首) · the body(本文) · the end(卷末). *Gwa-ik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2,356 persons(1st grade: 80 persons, 2nd grade: 846 persons, 3rd grade: 1,430 persons) with 295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social status confirmed that 2,265 persons were Yang-ban(兩班)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Jung-in(中人) were 71 persons, Chun-in(賤人) were 11 persons and Yang-in(良人) were 9 persons.

키워드: 좌익원종공신녹권, 원종공신녹권, 좌익공신, 좌익원종공신, 초주갑인자

Gwa-ik Wonjong Gongsin-Nokgwon, *Wonjong Gongsin-Nokgwon*, *Gwa-ik Gongsin*,

Gwa-ik Wonjong Gongsin, *Choju-Gapin* letter type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우수연구자 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ny415@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8일

1. 緒論

우리나라 공신제도의 성립은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이미 신라시대 때 녹공(錄功)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고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녹권이 언제부터 작성되어 공신들에게 반사(頒賜)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공신을 책봉하여 녹권을 발급하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녹권이 일정한 체제를 갖추어 공신들에게 반사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국가의 대소사(大小事)에 공이 있는 신하들을 공신(功臣)으로 책봉(冊封)한 후 내려지는 공신증명서로 왕의 하명에 따라 반사(頒賜)되었다. 조선시대에 공신의 책봉은 태조(太祖) 때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책봉부터 영조(英祖)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 책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28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때 정공신과 원종공신을 각각 책봉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으로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공신녹권은 개국 초기에는 공신의 수가 적어 필사하여 반사하였다. 그러나 점차 공신의 책봉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공신도감(功臣都監)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녹권을 책자형태로 간행하여 반사하였다. 이렇게 반사된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이라고 약칭) 및 기타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사실을 다

루고 있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녹권의 형태서지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좌익원종공신녹권(佐翼原從功臣錄券)』은 조선시대에 발급되어 현존하는 21종의 녹권 중 처음으로 선장본(線裝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세조 4(1458)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으로, 이는 금속활자본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¹⁾ 그러나 이 녹권은 조선 초기에 발급된 것이며 현재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 및 사유를 알아보고, 현재 전존되고 있는 현존본을 조사하여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편성체계를 살펴보고, 녹권에 기재된 공신의 직함 및 성명을 각 등급 및 신분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佐翼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現存本

이 장에서는 좌익공신의 책봉(冊封), 『좌익원종공신녹권』의 반사되기까지의 경위와 반사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의 소장처와 그 특징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1) 진나영. 2008.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41-42 참고.

2.1 頒賜事由

좌익공신(佐翼功臣)은 세조 1(1455)년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공신호(功臣號)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좌익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수양대군은 단종 2(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²⁾을 통해 1차적으로 그와 맞서는 사람들인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을 몰아낸 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 이조판서(吏曹判書) · 병조판서(兵曹判書) · 내외병마도통사(內外兵馬都統使)를 겸직하면서 정권과 병권을 독점하였다.

또한 정인지(鄭麟趾) · 신숙주(申叔舟) · 권람(權寧) 등 심복들을 주요 관직에 배치하였

다. 1455년 수양대군은 그와 대적되는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비롯하여 조유례(趙由禮) · 성문치(成文治) · 혜빈 양씨 등을 모두 살해하거나 귀양 보내도록 강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결국 왕위를 물려받은 수양대군은 그 해 9월 왕위를 잇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좌익공신으로 책봉하도록 명함으로써, 좌익공신의 책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³⁾

좌익공신 및 좌익원종공신과 관련된 『세조실록』의 기사와 『좌익원종공신녹권』의 전지(傳旨)의 내용을 <표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세조는 좌익공신 중 정공신 44명을 책봉하였는데, 1등공신으로 계양군(桂陽君) · 권람 · 신숙주 · 한명회(韓明渾) 등 7명이고, 2등공신은 정인지 등 12명이며, 3등공신은 25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책봉되었다. 또한 세조는 좌익공신

<표 1> 佐翼功臣의 冊封 過程

年代	朝代	月	日	内 容	備 考
1453	端宗1	10		수양대군이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을 숙청함	癸酉靖難 (靖難功臣)
1455	世祖1	端宗3	02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등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엄자치(嚴自治) 등의 환관을 외방에 유배	
		閏06	11	혜빈(惠嬪) 양씨 · 상궁 박씨 등을 귀양 보냄 노산군(魯山君)이 세조에게 선위함	世祖 卽位
		08	13	혜빈 양씨와 상궁 박씨의 가신을 적물(籍沒)하고, 금성대군 이유는 논하지 않음	
		09	05	좌익공신을 정합(正功臣 44명)	
1456	世祖2	06	02	성균사에 김질(金質)과 우찬성 정창손(鄭昌孫)이 성삼문(成三問)의 불궤를 고합	사육신 (死六臣) 사건
				성삼문, 권자신 등을 좌익공신에서 삭제 및 김질 등 공신으로 책봉됨(正功臣 41명)	

2) 단종 1(1453)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金宗瑞)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

3)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9月 丁丑條.

〈표 2〉 佐翼功臣 및 佐翼原從功臣 冊封 事實

年代	朝代	月	日	内 容	實錄	錄券
1455	世祖 1	08	13	공신 책봉을 명하다	○	
		09	05	좌익공신을 정하다	○	
		09	09	좌익공신의 포상을 좌명공신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명하다	○	
		09	10	이조에서 좌익공신의 봉작과 전토 하사에 관하여 아뢰다	○	
		09	14	사정전에서 좌익공신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	
		09	20	이중 등을 봉작하고 관직을 제수하다	○	
		10	22	좌익공신을 거느리고 함께 맹세하는 글	○	
		12	27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답 등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다	○	○
1456	世祖 2	05	29	1, 2, 3등의 원종공신을 정하다	○	
		06	08	이조에서 원종공신의 아문을 충의사로 부를 것을 청하여 따르다	○	
		06	25	이조에서 원종공신을 논상하는 절목을 아뢰다	○	
		12	08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함	○	
1457	世祖 3	08	12	정현 · 김훈지 · 권지 등은 원종공신 2등으로 정홍손은 3등으로 녹훈하게 하다	○	○
1458	世祖 4	10		왕이 녹권을 시행할 것을 명함	○	
1459	世祖 5	07	15	護軍 林於乙云을 荟로 이름을 고쳐라	○	

을 거느리고 함께 맹세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였다.⁴⁾

이 중에서 성삼문(成三問) · 이휘(李徽) · 권자신(權自愼) 등 3명은 세조 2(1456)년에 단종 복위를 도모한 사건으로 공신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고발한 정창손은 2등으로 승진되고, 김질(金銷)은 3등에 추록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좌익공신이 된 사람들은 1등공신 7명, 2등공신 12명, 3등공신 22명 등 41명이었다.

정공신 책봉 3달 후에는 세조를 왕위에 추대하는 데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세조가 내린 교서의 내용에 따르면 잠저(潛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세

조를 보호하고 수종(隨從)하거나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쓴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도록 의정부에 명하였다.⁵⁾

이로 인해 책봉된 원종공신은 2,356명으로 1등원종공신은 80명, 2등원종공신은 836명, 3등원종공신은 1,430명이었다. 원종공신은 신분의 구별 없이 책봉되었으나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문관이 많았고, 2등원종공신은 무관들도 많았으며, 3등원종공신은 문 · 무 관료들을 비롯하여 1 · 2등에 비하여 신분이 낮은 노비 등까지 구성되어 있다. 좌익공신은 정난(靖難)공신과 함께 세조의 왕위쟁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좌익원종공신도 정공신을 도와 세조의 왕위 추대에 힘쓴 사람들이었다.

4)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0月 甲子條.

5)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戊辰條.

2.2 現存本 現況

현존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 규장각에 1책, 그리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2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현존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은 모두 4책이었다. 수급자 이외에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녹권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규장각본은 다른 녹권에 비해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 녹권은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있다. 또한 규장각 해제에서는 이 녹권을 『정난원종공신녹권(靖難原從功臣錄券)』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자가 녹권의 형태 및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두 『좌익원종공신녹권』과 동일했다. 규장각의 해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은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되어 녹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화산貴126)은 가장 마지막 장이 낙장(落張)되어 4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 『佐翼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이 장에서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알아보며,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을 조사하여 녹권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로 나누어 각 부분의 내용도 조사한다.

3.1 形態 分析

『좌익원종공신녹권』은 세조 4(1458)년에 금속활자 중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1책(47장)으로 현존하는 조선 초기 원종공신녹권 중 처음으로 선장(線裝)의 형태로 제책되었다. 표제(表題)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으로 묵서(墨書)되어 있고, 권수제(卷首題)는 녹권의 발급기관이었던 '이조(吏曹)'⁶⁾로 되어 있다. 이 책의 형태서지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3〉 『佐翼原從功臣錄券』의 現存本 現況

番號	所藏處	請求記號
1	국립중앙도서관	古貴2513-4
2	규장각	古貴920.051W49
3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貴126A
4		화산貴126

6) 이조(吏曹)는 조선시대 문선(文選) · 훈봉(勳封) · 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태조 1(1392)년에 문선사(文選司) · 고훈사(考訓司)를 늘려 운영하였고, 태종 5(1405)년에 승녕부(承寧府) · 공안부(恭安府) · 종부시(宗簿寺) · 인녕부(仁寧府) · 상서사(尙瑞司) · 사선서(司善署) · 내시부(內侍府) · 공신도감(功臣都監) · 내시원(內侍院) · 차방(茶房) · 사옹방(司饔房)이 편속되었다. 이조에 공신도감이 편속되어 있음을 통해 이조감 공신도감의 상위 부서임을 알 수 있으며, 공신의 책봉을 비롯하여 녹권의 발급을 담당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事項

佐翼原從功臣錄券 / 吏曹 編. - 初鑄甲寅字本. - 漢城: 吏曹, 世祖 4(1458)年.
1冊(47張): 四周單邊, 半廓 25.1 × 17.8 cm, 10行17字, 內向黑魚尾 : 34.0 × 22.3 cm.

印記: 吏曹之印

版心題: 原從功臣錄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25.1 × 17.8 cm이고 전체 책의 크기는 34.0 × 22.3 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10행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계선(界線)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版心部)에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어 활자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장(印章)은 「이조지인(吏曹之印)」⁷⁾이 대체적으로 수급자가 기재된 권수제면(卷首題面)과 본문이 끝나면서 권말이 시작되는 면의 사이, 이렇게 2곳에 주인(朱印)하였다.

3.2 體制 分析

『좌의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부분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권수 체제는 권수제,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및 본관으로 이루어졌다. 본문 체제는 공신책봉과 관련된 봉명일과 봉명자, 반사사유 및 경

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명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과 이를 시행할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권말 체제는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씨, 수결로 이루어져 있다.

3.2.1 卷首

『좌의원종공신녹권』의 권수 부분에서는 권수제와 수급자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권수제에는 녹권의 발급기관인 이조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넣었다. 직함을 쓸 때에는 겸직(兼職)이나 전직(前職)의 직함까지 모두 쓰고 있었다. 성명 아래에는 수급자의 본관(本貫)을 썼는데 '本○○'로 나타내고 있다. 이 녹권 금속활자로 인출되었으나, 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필사한 것으로 보아, 녹권을 찍은 후 수급자 부분은 수급 대상자가 모두 다르므로 일일이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하는 녹권 4책의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본관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녹권 4책의 수급자들은 2등원종공신이 3명, 3등원종공신이 1명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밀했듯이 수급자들의 직함에서 겸직이나 전직을 모두 쓰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등급별 공신의 직

7) 이조지인(吏曹之印)은 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기관인 이조의 인(印)을 딥인(踏印)한 것으로, 『開國原從功臣錄券』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5〉『佐翼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 容		印 章
卷首	卷首題	發給機關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 (吏曹之印)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 (吏曹之印)
	傳旨	傳旨……(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手決)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手決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 (吏曹之印)

〈표 6〉現存本『佐翼原從功臣錄券』의 受給者 身分

番號	調査對象本	受給者の 職銜	姓名	本貫	等級
1	국립중앙도서관본	承義校尉忠佐侍衛司前領副司直	裴文郁	興海	2등
2	규장각본	敦勇副尉左軍司正	崔 涵	和順	2등
3	고려대도서관본	行正字	權 徵	安東	2등
4		通善郎行內贍判官	李尹孫	星州	3등

함과 성명에서는 직함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 간단히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承義校尉忠佐侍衛司前領副司直 裴文郁'은 본문의 등급별 공신을 나열한 부분에서는 '副司直 裴文郁'으로 기재하였다. 즉 『좌익원종공신녹권』 권수 부분의 수급자에 관한 사항에서는 수급자의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함을 비롯한 본관을 나타내고 있다.

3.2.2 本文

본문에서는 공신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

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내용 및 여러 전지(傳旨)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세조 1(1455)년 12월 27일, 왕이 의정부에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이는 '都承旨 朴元亭'이며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는 '전지(傳旨)'를 표기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표 7〉『佐翼原從功臣錄券』의 本文 内容

順序	内 容	奉命者	備 考
1	世祖 1(1455)年 12月 27日 의정부에(원종)공신책봉을 하라고 명함	都承旨 朴元亨	
2	傳旨(공신책봉 경위 및 사유)		
3	世祖 2(1456)年 05月 29일 1, 2, 3등의 원종공신을 정함	右承旨 韓明澮	
4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5	世祖 2(1456)年 12月 08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함 - 吏曹 담당	都承旨 韓明澮	
6	등급별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		
7	世祖 3(1457)年 08月 12日 원종공신을 추가로 책봉함	都承旨 韓明澮	
8	世祖 3(1457)年 09月 06日 녹권 시행에 관해 물음	都承旨 曹錫文	
9	世祖 4(1458)年 10月 왕이 녹권을 시행할 것을 명함		
10	世祖 5(1459)年 07月 15일 護軍 林於乙云을 荟로 이름을 고쳐라	都承旨 尹子雲	墨書

‘공을 기록하고 상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법이다. 덕이 적은 내가 외람되게 대위에 앉았는데 잠저(潛邸)에서의 어려운 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니 동덕(同德)의 신하들이 전후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열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명나라 천자를 뵈울 때에 발섭(跋涉)의 노고를 하였고 혹은 정란에 참여하여 방위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 하였으니 모두 원종의 공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을 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 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 할 것이다.’⁸⁾

위의 전지의 내용을 통해 좌익원종공신은 세조가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등급별로 공신을 정하도록 세조 2(1456)년 5월 29일 ‘都承旨 韓明澮’에게 명하였으며, 그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80명, 2등은 835명이었고 3등은 1,260명이 책

8) 吏曹 編, 『佐翼原從功臣錄券』

教旨紀功行賞有國之令典予以寡德叨居大位願念潛邸艱難之時賴同德之臣左右先後以保寡躬或是予同列或是僚佐或屬戚之近或隨從之舊或與朝天共跋涉之勞或參靖難有捍爲之勤下逮僕隸之奔走伐有原從之功式至令休予敢急哉當先示褒賞之典以堅終始之義咨爾議政府體予至懷宜速舉行爲良如教事是自有良爾.

봉되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等乙良佐翼原從○等功臣’을 기재하여 등급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으며,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조 2(1456)년 12월 8일에 왕은 ‘도승지 한명회’⁹⁾에게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각 등급별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 까지

〈표 8〉『佐翼原從功臣錄券』의 褒賞規程 및 特典 內容

區 分	內 容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 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封爵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務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叙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妻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私賤		公處奴婢 充給

9) 앞서 세조 2(1456)년 5월 29일의 봉명자인 한명회의 직함은 우승지(右承旨)였고, 세조 2(1456)년 12월 8일의 봉명자인 한명회의 직함은 도승지(都承旨)였다. 이로써 5월 29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한명회의 관직이 우승지에서 도승지로 변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유죄(宥罪)한다.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¹⁰⁾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읍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읍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한다. 또한 공신 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거둔 자는 돌려주고, 첨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도록 하였다.

세조 3(1457)년 8월 12일에 왕은 '都承旨

曹錫文'에게 원종공신을 추가로 책봉할 것을 명하였다. 여기에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1등은 없고 2등은 11명, 3등은 169명이 추가로 책봉되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재 순서에 특별한 규칙이나 기준은 없었다. 이로써 죄의원종공신의 등급별 공신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녹권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추가로 책봉된 공신까지 포함하면 1등공신은 80명, 2등공신은 846명, 3등공신은 1,430명이 책봉되었으며 이로써 죄의원종공신은 모두 2,356명이었다.

세조 4(1458)년 10월에 왕은 녹권을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를 통해 『죄의원종공신녹권』이 반사(頒賜)되기까지는 세조 1(1455)년 12월부터 세조 4(1458)년 10월까지 대략 3년의 기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이의 봉명자들을 살펴보면 박원형·한명희·조석문 등 3명이었는데, 이를 통해 녹권 시행에 관련된 왕의 명을 받은 담당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조 5(1459)년 7월 15일 왕은 호군(護軍) 박어을운(朴於乙云)의 이름을 운(芸)으로 고치라는 명을 '都承旨 尹子雲'에게 내렸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묵서(墨書)되어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4권의 녹권에 모두 기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이

<표 9> 『佐翼原從功臣錄券』에 登載된 等級別 功臣의 數

等級	1차	2차	合計
1	80	0	80
2	835	11	846
3	1,260	170	1,430
合計	2,175	181	2,356

10) 품계(品階)만 있고 실직(實職)이 없는 벼슬, 또는 그러한 벼슬아치.

아니라, 왕의 명령이 있은 후 반사된 녹권의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후손들에 의해 각각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문에서 나타난 봉명자들의 직함을 살펴보면 승지(承旨)라는 관직이 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승지는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 도승지(都承旨) · 좌승지(左承旨) · 우승지(右承旨) · 좌부승지(左副承旨) · 우부승지(右副承旨) · 동부승지(同副承旨) 등 6승지를 말하며 왕명의 출납(出納)을 담당하였다.¹¹⁾ 이는 곧 공신의 책봉이나 녹권의 발급에 관한 왕의 명령은 승지를 통하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卷末

권말에는 첫 행에는 녹권을 발급 및 반사를 주관했던 기관인 이조(吏曹)가 가장 먼저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부터는 그 기관에서 녹권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姓氏), 그들의 수결로 구성되어 있다. 『좌익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좌익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은 모두 10명이었으며, 좌랑 3명 · 정랑 3명 · 참의 1명 · 참판 1명 · 판서 1명 · 판사 1명 등 5개의 관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품계를 보면 정6품부터 종1품까지로, 다양한 품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 성씨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했던 관원들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과 성씨가 기재되어 있다. 성명(姓名)이 아니라 성씨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직 및 직함을 통해 몇몇 사람을 추측해볼 수 있다. ‘判書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禎大夫上黨君 韓’은 ‘한명회(韓明渾)’로, ‘兼判事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禎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吉昌君 權’은 ‘권람(權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의 나머지 8명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부족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

이들은 성씨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씨 아래 부분에 수결을 하였는데, 모든 구성원이

〈표 10〉 發給 官員의 官職名 및 品階

番號	官職名	品階	人員數
1	佐郎	정6품	3
2	正郎	정5품	3
3	參議	정3품	1
4	參判	종2품	1
5	判書	정2품	1
6	判事	종1품	1
合 計			10

1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편찬부. 199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8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26.

〈표 11〉 官員의 官職·職銜 및 姓氏·手決

番號	官職·職銜	姓氏	手決		姓名
			國立本	高大本	
1	守佐郎宣教郎兼承文院副校理春秋館記事官	成	無	有	미상
2	佐郎承議郎	崔	無	無	미상
3	行佐郎通善郎	李	無	有	미상
4	正郎通善郎知製教兼承文院校理	柳	無	無	미상
5	行正郎朝奉大夫	朴	無	有	미상
6	行正郎朝奉大夫兼承文院校理	安	無	無	미상
7	參議通政大夫集賢殿直提學	姜	有	有	미상
8	參判嘉靖大夫寶文閣提學	辛	無	無	미상
9	判書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禎大夫上黨君	韓	無	無	韓明滄
10	兼判事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崇禎大夫判中樞院事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吉昌君	權	有	有	權寧

수결을 한 것은 아니었다. 현존하는 4책의 녹권 중 규장각본과 고려대 도서관본 중 1책은 훼손되어 볼 수 없었으나, 나머지 2책의 녹권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결된 부분이 서로 달랐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경우에는 관원 중 2명의 수결이 있는 반면,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은 5명의 관원이 수결을 하였다. 이렇듯 동일한 녹권이라도 수결한 사람이 동일하지 않거나 수결의 유무(有無)가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재(不在) 중인 관원으로부터는 수결을 받지 못했으며, 녹권의 발급기관이 공신책봉 업무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담당 관원 모두가 수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권말 부분에서 본문까지와는 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본문까지는 활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에서는 목판으로 찍어 인출되었다는 것이다. 권말에서 목판으로 인쇄한 이유는 관원의 직함을 표기할 때 관원의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직함을 모두 기재하고 있

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4. 『佐翼原從功臣錄券』의 内容 分析

이 장에서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힘쓴 공으로 책봉된 좌익원종공신의 직함 및 신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바탕으로 각 등급 및 신분별로 인원수를 분석하여 좌익원종 공신들의 신분적 특징을 조사한다.

4.1 等級別 分析

4.1.1 佐翼原從功臣一等

좌익원종공신 1등은 모두 80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분석해보면 모두 46개로 나타났다. 이 직함을 근거로 이를 품계별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佐翼原從功臣 1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 衡	人員	比率(%)
정1품	判典醫監事	1	1.3
종1품	左贊成	1	1.3
정2품	內侍府事, 禮曹判書, 中樞院使, 知敦寧, 判內侍府事	5	6.2
종2품	慶昌府尹, 同知敦寧, 同知中樞, 同判內侍, 府尹, 星原尉, 延昌尉, 仁順府尹, 全義尉, 中樞院副使, 知中樞, 青城尉, 訓鍊副使	18	22.5
정3품	都節制使, 牧使, 上護軍, 直提學, 處置使, 僉知中樞, 行上護軍	25	31.2
종3품	都護府使, 知司譯院使	2	2.5
정4품	司藝, 應敎, 行護軍, 護軍	10	12.5
종4품	萬戶	1	1.3
정5품	司直, 正郎, 行校理	8	10.0
종5품	判官	1	1.3
정6품	監察, 同司鑰, 正言	3	3.5
종6품	縣監	1	1.3
정7품	司正, 行司正	2	2.5
종7품			
정8품	訓鍊錄事	1	1.3
종8품			
정9품			
종9품			
기타	學生	1	1.3
合 計		80	100

〈표 12〉를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정3품에 해당되며, 모두 25인이 대상자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2품으로 모두 18인에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좌익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46개의 직함에 80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직함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아래의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이 기재된 직함은 오위(五衛)에 두었던 정3품 서반 무관직인 상호군으로 9명이었고, 이어서 첨지중추로 7명, 사직 6명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직위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총 80명 중에 47명인 58.8%가 문관이었고 32명인 40.0%가 무관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관보다는 문관이 1등공신으로 더 많이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1명은 학생(學生)이란 존칭으로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4.1.2 佐翼原從功臣二等

좌익원종공신 2등은 모두 846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분석해보면 170개로 나타났다. 이 직함을 근거로 이를 품계별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3〉 佐翼原從功臣 1等의 順位別 職銜

順位	職銜	品階	文/武官	人員數	比率(%)
1	上護軍	정3품	무관	9	11.3
2	僉知中樞	정3품	문관	7	8.8
3	司直	정5품	무관	6	7.5
4	護軍	정4품	무관	4	5.0
5	同知中樞	종2품	문관	3	3.75
	行上護軍	정3품	무관	3	3.75
	行護軍	정4품	무관	3	3.75
合計				35	43.8

〈표 14〉 佐翼原從功臣 1等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47	58.8
무관	32	40.0
기타 ¹²⁾	1	1.2
合計	80	100.0

〈표 15〉 佐翼原從功臣 2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	比率(%)
정1품			
종1품	左贊成, 判都護府事, 判事, 判中樞, 判通禮門, 判漢城	12	1.3
정2품	兵曹判書, 府事, 領議政府事, 禮曹判書, 中樞院使, 知敦寧, 知事, 知承文院事, 知通禮, 知刑曹事, 判內侍, 判書, 行內侍府事, 行同僉內侍, 行知內侍, 行知事, 戸曹判書	22	2.6
종2품	觀察使, 大司憲, 都觀察使, 同知敦寧, 同知中樞, 鈴平尉, 留守, 府尹, 副知事, 副知承文院事, 提學, 中樞院副使, 知中樞, 參判, 坡原尉, 判牧使, 漢城府尹	41	4.8
정3품	監正, 兼軍器監正, 果毅將軍, 同副知, 同副知敦寧, 牧使, 副提學, 司憲執義, 上護軍, 右副承旨, 節制使, 直提學, 參議, 處置使, 僉知中樞, 海安撫使, 行牧使, 行上護軍, 行僉知敦寧, 行僉知中樞	49	5.8
종3품	大護軍, 都節制使, 府使, 副正, 右司諫, 左司諫, 同僉知敦寧	18	2.1
정4품	奉禮, 司藝, 舍人, 少尹, 應教, 掌令, 直集賢殿, 行護軍, 護軍	42	5.0
종4품	經歷, 萬戶	5	0.6
정5품	檢詳, 校理, 司直, 守司直, 右軍司直, 正郎, 左承直, 持平, 通善郎, 行司直, 獻納	70	8.3
종5품	兼校理, 郡事, 都事, 奉訓郎, 副校理, 副司直, 署令, 右承直, 判官, 行郡事, 行副司直, 行判官, 縣令	70	8.3
정6품	監察, 司謁, 司鑰, 修撰, 承議郎, 承訓郎, 佐郎, 贈司憲監察, 進勇校尉	32	3.8
종6품	教授官, 副修撰, 宣務郎, 修義校尉, 承義校尉, 注簿, 進武副尉, 行注簿, 行縣監, 縣監	47	5.6
정7품	兼博士, 兼宗學博士, 權知參軍, 博士, 奉教, 司正, 右軍司正, 參軍, 行司正, 行典事	69	8.2

12) '學生'으로 기재되어 있어 생전에 공식적인 관직에 나아가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존칭.

종7품	敦勇副尉, 副司正, 謁者, 直長, 進勇副尉, 行副司正, 行謁者	54	6.4
정8품	權知訓鍊錄事, 錄事, 待敎, 承義副尉, 著作, 著作郎, 行管事, 行錄事, 訓鍊錄事	40	4.7
종8품	副謁者, 書吏, 修義副尉, 進義副尉, 行副管事	59	7.0
정9품	檢閱, 慶昌府丞, 權知正字, 司勇, 仁順府丞, 正字, 行司勇, 行正字, 訓導	94	11.1
종9품	權知學諭, 別監, 副正字, 知印, 進義副尉, 學諭, 行陵直, 行副正字	111	13.1
기타	奴, 學生	11	1.3
合 計		846	100

위의 〈표 15〉를 보면 2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종9품에 해당되며, 모두 111인이 대상자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9품으로 모두 94인에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품계는 10%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좌익원종공신 2등에는 모두 170개의 직함에 846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등 대상자 846명 중 가장 많이 분포된 직함을 상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을 살펴보면, 846명 중 약 10.8%인 91명의 사람들이 품계가 낮은 무관직인 진의부위(進義副尉)의 직함을 가졌고, 다음으로 무관직인 수의부위(修義副尉), 사정(司正) 등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총 846명 중 54.4%인 460명이 무관이었고, 40.2%인 340명은 문관이었다. 이로 보아 2등공신은 문관보다는 무관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에는 노비·학생·교수관(教授官)·지인(知印)·서리(書吏) 등이 포함된다.

〈표 16〉 佐翼原從功臣2等의 順位別 職銜

順位	職銜	品階	文/武官	人員數	比率(%)
1	進義副尉	종9품	무관	91	10.8
2	修義副尉	종8품	무관	55	6.5
3	司正	정7품	무관	47	5.6
4	副司正	종7품	무관	37	4.4
	司勇	정9품	무관	37	4.4
	司直	정5품	무관	37	4.4
合 計				304	36.1

〈표 17〉 佐翼原從功臣 2等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文 관	340	40.2
무 관	460	54.4
기타	46	5.4
合 計	846	100.0

4.1.3 佐翼原從功臣三等

좌익원종공신 3등은 모두 1,430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분석해보면 18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직함을 근거로 이를 품계별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8〉과 같다. 〈표 18〉을 보면 3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종5품에 해당되며, 모두 202인이 대상자로 1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종6품으로 모두 171인에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품계는

10% 미만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좌익원종공신 3등에는 모두 188개의 직함에 1,430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직함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1,430명의 3등인 좌익원종공신 중에 7.3%에 해당하는 105명이 오위에 두었던 정4품 무관인 호군이었으며, 다음으로 종6품 낭관(郎官)인 주부가 71명으로

〈표 18〉 佐翼原從功臣 3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 衡	人員	比率(%)
정1품			0
종1품	左贊成, 判內資寺事, 判事, 判宗簿寺事	20	1.4
정2품	庫使, 使, 知事, 知司譯院事, 知通禮門事, 判漢城府事	9	0.6
종2품	副使, 訓鍊觀使	8	0.6
정3품	監正, 兼軍器監正, 果毅將軍, 內禁衛, 牧使, 上護軍, 穩城節制使, 正, 鎮撫, 進勇府使, 僉知, 僉知通禮門事, 行正	27	1.9
종3품	兼軍器監副正, 內資尹, 大護軍, 都萬戶, 奉常尹, 府使, 副正, 副知, 寺尹, 禮賓寺尹, 尹, 知別監, 瞻尹, 僉節制使, 行大護軍, 行尹	61	4.3
정4품	奉禮, 司藝, 少尹, 守司藝, 守少尹, 守護軍, 掌令, 典籤, 行少尹, 行護軍, 護軍	148	10.3
종4품	經歷, 萬戶, 副典籤, 朝奉大夫, 行經歷	20	1.4
정5품	校理, 副司直, 司直, 正郎, 持平, 直講, 通德郎, 通善郎, 行校理, 行令, 行司直, 獻納	100	7.0
종5품	郡事, 都事, 別坐, 奉直郎, 奉訓郎, 副校理, 部令, 副司直, 署令, 守判官, 丞, 判官, 行郡事, 行副司直, 行丞, 行判官, 行縣令, 縣令	202	14.1
정6품	監察, 司謁, 司鑰, 承訓郎, 典樂, 正言, 佐郎, 進勇校尉, 行司鑰, 行佐郎	58	4.1
종6품	兼軍器注簿, 兼注簿, 宮直, 飯監, 副丞, 宣教郎, 宣務郎, 宣武郎, 修義校尉, 承義校尉, 注簿, 進武副尉, 察訪, 行副丞, 行注簿, 行縣監, 縣監	171	12.0
정7품	權知參軍, 務功郎, 博士, 司正, 雅樂令, 典吏, 典事, 典律, 參軍, 行司正	137	9.6
종7품	啓功郎, 敦勇副尉, 副司正, 副典律, 謁者, 注書, 直長, 進勇副尉, 行副司正, 行謁者, 行掌漏, 行直長	122	8.5
정8품	兼直長, 管事, 權知訓鍊錄事, 錄事, 副直長, 承義副尉, 視日, 侍直, 通仕郎, 行錄事, 行視日	85	5.9
종8품	給事, 副錄事, 書吏, 修義副尉, 承仕郎, 楽吏, 令史, 行副管事	48	3.4
정9품	監候, 甲士司勇, 隊長, 副給事, 司辰, 司勇, 守司勇, 前司勇, 從仕郎, 行監候, 行司勇	90	6.3
종9품	檢律, 隊副, 別監, 別侍衛, 補充軍, 司曆, 驛丞, 將仕郎, 知印, 直律, 進義副尉, 吹羅赤, 行陵直, 行司曆	62	4.3
기타	及第, 內資奴, 奴, 書房色, 驛子, 才人, 進士, 學生	62	4.3
	合 計	1,430	100

〈표 19〉 佐翼原從功臣3等의 順位別 職銜

順位	職銜	品階	文/武官	人員數	比率(%)
1	護軍	정4품	무관	105	7.3
2	注簿 ¹³⁾	종6품	문관	71	5.0
3	副司直	종5품	무관	63	4.4
	司正	정7품	무관	63	4.4
5	學生			52	3.6
合 計				354	24.7

않았다. 또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총 1,430명 중 46.4%인 664명이 문관이었고, 44.3%인 633명은 무관이었다. 이로 보아 3등공신은 문관이 무관보다 그 인원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거나 노비·서리(書吏)·서방색(書房色) 등의 직함이 포함되었다.

이상에서 좌익원종공신을 각 등급별로 품계와 직함에 따른 인원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좌익원종공신 1등은 46개의 직함에 80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9명으로 구성된 직함은 상호군이었으며 이어서 첨지중추 7명, 사직 6명, 호군 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등공신들의 문·

무관을 구별해보니 절반 이상이 문관이었다.

그리고 좌익원종공신 2등은 170개의 직함을 가진 846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가장 많은 인원이었던 직함은 진의부위 91명, 다음으로 수의부위 55명, 사정이 47명이었다. 이들은 1등 공신과는 달리 무관의 경우가 문관보다 많았다. 좌익원종공신 3등은 188개의 직함에 1,430명이 기재되었으며, 가장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직함은 105명의 호군이었고 이어서 주부 71명, 부사직과 사정이 각각 63명이었다. 이들 문관이 무관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체적으로 1등 공신은 2·3등 공신과 비교해볼 때 품계나 지위가 높은 편이었던 반면, 2·3등은 1등보다 품계나

〈표 20〉 佐翼原從功臣 3等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文 관	664	46.4
무 관	633	44.3
기 타	133	9.3
合 計	1,430	100.0

13)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주부의 한자 표기가 主簿로 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관직제도를 살펴보면 주부는 注簿로 표기되었다. 이로 보아 『좌익원종공신녹권』이 발급되던 시기인 조선 초기 세조조(世祖朝)까지도 고려의 관직 제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위가 낮았고 무관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4.2 身分別 分析

조선 초기의 신분계층은 대체로 양반(兩班) · 중인(中人) · 양인(良人) · 천인(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 · 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¹⁴⁾, 양반 · 평민(平民) · 천민(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반 · 중인 · 양인 · 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그 신분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네 개¹⁵⁾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4.2.1 兩班

양반은 문 · 무관직(文 · 武官職)의 사람들 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감찰(監察) 등 33개의 직함¹⁶⁾은 각 1명, 도절제사(都節制使) 등 6개의 직함¹⁷⁾은 각 2명, 동지중추(同知中樞) 등 3개의 직함¹⁸⁾은 각 3명이었다. 그리고 호군(護軍)이 4명, 사직(司直)은 6명, 첨지중추(僉知中樞)는 7명, 상호군(上護軍)은 9명이었다. 즉 46개의 직함을 가진 80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감정(監正) 등 75개의 직함¹⁹⁾은

14) 韓永愚 著, 『朝鮮時代 身分史研究』(서울: 집문당, 1997), 14-15.

15)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양 · 천중간(良 · 賤中間) 신분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

1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찰(監察) · 경창부윤(慶昌府尹) · 내시부사(內侍府事) · 도호부사(都護府使) · 동사약(同司鑰) · 만호(萬戶) · 사예(司藝) · 사정(司正) · 성원위(星原尉) · 연창위(延昌尉) · 예조판서(禮曹判書) · 인순부윤(仁順府尹) · 전의위(全義尉) · 정랑(正郎) · 정언(正言) · 좌찬성(左贊成) ·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 중추원사(中樞院使) · 지돈녕(知敦寧) ·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 지중추(知中樞) · 직제학(直提學) · 처치사(處置使) · 청성위(青城尉) · 판관(判官) ·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 판진의감사(判典醫監事) · 학생(學生) · 행교리(行校理) · 행사정(行司正) · 현감(縣監) · 훈련녹사(訓鍊錄事) · 훈련부사(訓鍊副使) 등 33개이다.

1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도절제사(都節制使) · 동지돈녕(同知敦寧) · 동판내시(同判內侍) · 목사(牧使) · 부윤(府尹) · 응교(應敎) 등 6개이다.

1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동지중추(同知中樞) · 행상호군(行上護軍) · 행호군(行護軍) 등 3개이다.

1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정(監正) · 겸상(檢詳) · 겸군기감정(兼軍器監正) · 겸박사(兼博士) · 경창부승(慶昌府丞) · 박사(博士) · 대사헌(大司憲) · 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 영평위(鈴平尉) · 유수(留守) · 목사(牧使) · 병조판서(兵曹判書) · 봉례(奉禮) · 부정자(副正字) · 부지사(副知事) · 사약(司鑰) · 사인(舍人) · 사헌집의(司憲執義) · 서령(署令) · 선무랑(宣務郎) · 수찬(修撰) ·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 우부승지(右副承旨) · 우사간(右司諫) · 우승직(右承直) · 인순부승(仁順府丞) · 저작랑(著作郎) · 제학(提學) · 과의장군(果毅將軍) · 좌사간(左司諫) · 좌승직(左承直) · 증사헌감찰(贈司憲監察) · 부알자(副謁者) · 부지(副知) · 지사(知事) ·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 지통례(知通禮) · 지평(持平) · 지형조사(知刑曹事) · 승의교위(承議校尉) · 우군사정(右軍司正) · 우군사직(右軍司直) · 통선랑(通善郎) · 파원위(坡原尉) · 관도호부사(判都護府事) · 관목사(判牧使) · 지중추(知中樞) · 판서(判書) · 판중추(判中樞) · 판통례문(判通禮門) · 진용교위(進勇校尉) · 진용부위(進勇副尉) · 참군(參軍) · 한성부윤(漢城府尹) · 행관사(行管事) · 행군사(行郡事) · 행내시부사(行內侍府事) · 행목사(行牧使) · 해안무사

각 1명, 좌찬성(左贊成) 등 28개의 직함²⁰⁾은 각 2명이었고 참판(參判) 등 19개의 직함²¹⁾은 각 3명이었다. 직제학(直提學) 등 8개의 직함²²⁾은 각 4명, 판사(判事) 등 7개의 직함²³⁾은 각 5명이었으며 중추원부사(中樞院府使)는 6명, 상호군(上護軍) 등 2개 직함²⁴⁾은 각 7명이었다. 소윤(少尹) 등 4개의 직함은 각 8명, 판관(判官)은 9명이며 진무부위(進武副尉)는 10명, 주부(注簿) 등 5개 직함²⁵⁾은 각 11명으로 구성되었다. 훈도(訓導) 등 2개 직함

은 각 12명, 좌랑(佐郎)은 14명, 군사(郡事) 등 2개의 직함²⁶⁾은 각 16명이며 녹사(錄事)는 17명, 호군(護軍)은 18명, 행사용(行司勇)은 19명이었다. 부사직(副司直)은 25명, 사직(司直) 등 3개 직함²⁷⁾은 각 37명, 사정(司正)이 47명이었고 수의부위(修義副尉)는 55명, 진의부위(進義副尉)는 9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166개 직함에 834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등에서는 검률(檢律) 등 63개의 직함²⁸⁾은

(海安撫使) · 행부관사(行副管事) · 행부정자(行副正字) · 행전사(行典事) · 행녹사(行錄事) · 행능직(行陵直) · 행정자(行正字) · 행지내시(行知內侍) · 행지사(行知事) · 행첨지돈녕(行僉知敦寧) · 행첨지중추(行僉知中樞) · 행판관(行判官) · 행현감(行縣監) · 현납(獻納) · 호조판서(戶曹判書) · 봉훈랑(奉訓郎) · 훈련녹사(訓鍊錄事) 등 75개이다.

-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종학박사(兼宗學博士) · 경력(經歷) · 동지중추(同知中樞) · 봉교(奉教) ·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 권지참군(權知參軍) · 사알(司謁) · 별감(別監) · 수의교위(修義校尉) · 승의부위(承義副尉) · 알자(謁者) · 승의랑(承義郎) · 승훈랑(承訓郎) · 예조판서(禮曹判書) · 치치사(處置使) · 응교(應教) · 행알자(行謁者) · 장령(掌令) · 좌첨찬(左參贊) · 중추원사(中樞院使) · 지돈녕(知敦寧) · 직집현전(直集賢殿) · 판내시(判內侍) · 판한성(判漢城) · 학유(學諭) · 행동첨내시(行同僉內侍) · 행주부(行注簿) · 현령(縣令) 등 28개이다.
-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교리(兼校理) · 대교(待教) · 도사(都事) ·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 동지돈녕(同知敦寧) · 대호군(大護軍) · 만호(萬戶) · 부교리(副校理) · 승의교위(承義校尉) · 부수찬(副修撰) · 부정(副正) · 부제학(副提學) · 사예(司藝) · 저작(著作) · 정자(正字) · 직강(直講) · 직장(直長) · 참의(參議) · 참판(參判) 등 19개이다.
-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열(檢閱) · 관찰사(觀察使) · 도관찰사(都觀察使) · 돈용부위(敦勇副尉) · 절제사(節制使) · 학생(學生) · 행부사직(行副司直) · 직제학(直提學) 등 8개이다.
-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교리(校理) · 도절제사(都節制使) · 행부사정(行副司正) · 행호군(行護軍) · 부사(府使) · 첨지중추(僉知中樞) · 판사(判事) 등 7개이다.
-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상호군(上護軍) · 행상호군(行上護軍) 등 2개이다.
-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행사정(行司正) ·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 정랑(正郎) · 주부(注簿) · 현감(縣監) 등 5개이다.
-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군사(郡事) · 권지정자(權知正字) 등 2개이다.
-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정(副司正) · 사용(司勇) · 사직(司直) 등 3개이다.
-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률(檢律) · 겸군기부정(兼軍器副正) · 겸군기주부(兼軍器注簿) · 겸직장(兼直長) · 경력(經歷) · 과의장군(果毅將軍) · 관사(管事) · 궁직(宮直) · 급사(給事) · 급제(及第) · 내금위(內禁衛) · 박사(博士) · 별시위(別侍衛) · 부교리(副校理) · 부전률(副典律) · 부전첨(副典籤) · 부지(副知) · 사(使) · 사알(司謁) · 사예(司藝) · 시윤(寺尹) · 선무랑(宣武郎) · 수사예(守司藝) · 수사용(守司勇) · 시일(視日) · 시직(侍直) · 알자(謁者) · 역승(驛丞) · 예빈시윤(禮賓寺尹) · 온성절제사(穩城節制使) · 전사용(前司勇) · 전률(典律) · 전첨(典籤) · 정(正) · 조봉대부(朝奉大夫) · 좌찬성(左贊成) · 지사(知事) ·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 · 지평(持平) · 진무(鎮撫) · 진사(進士) · 진용부사(進勇府使) · 진용부위(進勇副尉) · 첨윤(瞻尹) · 첨절제사(僉節制使) · 첨지(僉知) · 첨지통례문사(僉知通禮門事) ·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 행감후(行監候) · 행경력(行經歷) · 행교리(行校理) · 행군사(行郡事) · 행능직(行陵直) · 행부관사(行副管事) · 행사력(行司曆) · 행사약(行司鑰) · 행소윤(行少尹) · 행알자(行謁者) · 행윤(行尹) · 행현령(行縣令) · 훈련관사(訓鍊觀使) 등 31개이다.

각 1명, 헌납(獻納) 등 30개의 직함²⁹⁾은 각 2명, 부령(部令) 등 15개의 직함³⁰⁾은 각 3명이었다. 교리(校理) 등 8개의 직함³¹⁾은 각 4명, 정언(正言) 등 8개의 직함³²⁾은 각 5명이었고 종사랑(從仕郎) 등 4개의 직함³³⁾은 각 6명, 부사(副使) 등 5개의 직함³⁴⁾은 각 7명으로 이루어졌다. 승사랑(承仕郎) 등 3개의 직함³⁵⁾은 각 8명, 선무랑(宣務郎) 등 3개의 직함³⁶⁾은 각 9명, 좌랑(佐郎) 등 3개의 직함³⁷⁾은 각 10명, 대호군(大護軍) 등 2개의 직함³⁸⁾은 각 12명이었고 수의부위(修義副尉)는 13명, 행부사직(行副司直)은 14명이었다. 승의부위(承義副尉) 등 2개의 직함³⁹⁾은 각 15명, 진용부위(進勇副尉) 등 4개의 직함⁴⁰⁾은 각 16명, 판사(判事) 등 2개의 직함⁴¹⁾은 각 17명, 행사직(行司直)은 21명이었고 군사(郡事)는 23

명, 소윤(少尹)은 24명이었다. 직장(直長)은 26명, 행사용(行司勇)은 27명이었으며 행부사정(行副司正)은 29명이었다. 부사정(副司正)은 32명이었고 동반 종6품 외관직인 현감(縣監) 등 2개의 직함⁴²⁾이 각 36명이었다. 사용(司勇)은 42명, 사직(司直)은 43명, 녹사(錄事)가 49명이었고 판관(判官)은 51명이었다. 학생(學生)이 52명, 사정(司正) 등 2개의 직함⁴³⁾은 각 63명이었으며 주부(注簿)는 71명, 호군(護軍)이 105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1,351명이었고 171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좌익원종공신 2,356명 중 2,265명인 약 96.2%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니 1등은 46개 직함에 80명 모두가 양반계층이었으며 상호군 9명, 첨지중

- 2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갑사사용(甲士司勇) · 겸군기감정(兼軍器監正) · 내자윤(內資尹) · 대장(隊長) · 돈용부위(敦勇副尉) · 빙감(飯監) · 봉례(奉禮) · 봉상윤(奉常尹) · 봉직랑(奉直郎) · 부급사(副給事) · 부녹사(副錄事) · 부직장(副直長) · 수소윤(守少尹) · 수판관(守判官) · 윤(尹) · 전사(典事) · 주서(注書) ·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 · 칠방(察訪) · 참군(參軍) · 통덕랑(通德郎) · 통선랑(通善郎) · 행대호군(行大護軍) · 행령(行令) · 행승(行丞) · 행시일(行視日) · 행정(行正) · 행좌랑(行佐郎) · 행직장(行直長) · 현납(獻納) 등 30개이다.
-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후(監候) · 겸주부(兼注簿) · 고사(庫使) · 도만호(都萬戶) · 도사(都事) · 부령(部令) · 부승(副丞) · 사진(司辰) · 선교랑(宣敎郎) · 수호군(守護軍) · 지별감(知別監) · 진용교위(進勇校尉) · 행녹사(行錄事) · 행부승(行副丞) · 행판관(行判官) 등 15개이다.
-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교리(校理) · 목사(牧使) · 봉훈랑(奉訓郎) · 사력(司曆) · 승(丞) · 장령(掌令) · 행장루(行掌漏) · 행호군(行護軍) 등 8개이다.
-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계공랑(啓功郎) · 권지훈련녹사(權知訓鍊錄事) · 사약(司鑰) · 상호군(上護軍) · 정언(正言) · 진무부위(進武副尉) · 진의부위(進義副尉) · 통사랑(通仕郎) 등 8개이다.
- 3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정(監正) · 수의교위(修義校尉) · 종사랑(從仕郎) · 직강(直講) 등 4개이다.
-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별감(別監) · 부사(副使) · 승훈랑(承訓郎) · 장사랑(將仕郎) · 행현감(行縣監) 등 5개이다.
- 3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서령(署令) · 승사랑(承仕郎) · 현령(縣令) 등 3개이다.
- 3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선무랑(宣務郎) · 승의교위(承義校尉) · 행주부(行注簿) 등 3개이다.
- 3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무공랑(務功郎) · 별좌(別坐) · 좌랑(佐郎) 등 3개이다.
- 3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대호군(大護軍) · 부정(副正) 등 2개이다.
- 3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승의부위(承義副尉) · 정랑(正郎) 등 2개이다.
- 4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권지참군(權知參軍) · 만호(萬戶) · 부사(府使) · 진용부위(進勇副尉) 등 4개이다.
- 4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찰(監察) · 판사(判事) 등 2개이다.
- 4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행사정(行司正) · 현감(縣監) 등 2개이다.
- 4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직(副司直) · 사정(司正) 등 2개이다.

추 7명, 사직 6명 순이었다. 2등은 166개 직함에 834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98.6%에 해당하며 진의부의 91명, 수의부의 55명, 사정 47명 순이었고, 3등은 171개 직함에 1,351명으로 3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94.5%이며 호군 105명, 주부 71명, 부사직·사정 63명 순으로 구성되었다.

4.2.2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중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등에는 서울의 사학 및 향교(鄉校)에 파견하던 교관인 교수관(教授官) 2명, 지인(知印) 2명,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서리(書吏) 1명으로 3개의 직함에 5명이었다. 3등에는 연리(掾吏) 1명, 대전(大殿)이나 액정서에 속하여 왕에게 봇·벼루 따위를 공급하던 일을 담당한 서방색(書房色) 1명, 서리(書吏) 1명, 무반 잡직인 대부(隊副) 1명, 전율(典律) 1명, 전리(典吏) 4명,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전악(典樂) 7명, 영사(令史) 21명, 지인(知印) 29명으로 9개 직함에 66명이었다.

따라서 중인은 좌익원종공신 2,356명 중 약 3.0%인 70명이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 보니 1등에서는 중인이 없었고, 2등에서는 2등 공신 중 약 0.6%인 5명에 불과했다. 3등에서는 3등공신 1,430명 중 4.5%에 해당하는 66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4.2.3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과 2등에서는 양인의 신분을 가진 공신을 찾아볼 수 없었고, 3등에서는 군대에서 나각을 불던 취타수인 취라치[吹羅赤] 1명, 제주를 넘거나 사람을 웃기며 악기로 풍악을 울리던 광대인 재인(才人) 1명, 신량역천(身良役賤)의 간척(干尺)이나 한품(限品) 자손 따위로 편성된 군대로서 일정한 기간 노역하면 양인이 된 보충군(補充軍) 1명, 아악서와 전악서에 둔 악관인 직률(直律) 2명, 역자(驛子) 2명, 아악령(雅樂令) 2명으로 6개 직함에 모두 9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좌익원종공신 2,356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약 0.4%의 적은 인원만이 양인 계층이었다.

4.2.4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천역(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천인이 없었고, 2등에서는 노(奴) 7명이 있었다. 3등에서는 내자노(內資奴) 1명, 노(奴) 3명으로 2개의 직함에 4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좌익원종공신 2,356명 중 약 0.5%인 11명이 천인 신분으로 확인되었다. 천인 신분의 2등공신은 전체 2등공신 인원수 중 약 0.8%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3등공신 1,430명 가운데 약 0.3%인 4명이 천인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개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과 같이 『좌익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이 2,265명, 중인이 71명, 천인 11명, 양인 9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96.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

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각 등급별로 신분을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와 같이 1등공신 80명 중 양반 80명 이었으며 중인, 양인, 천인은 없었다. 2등공신 846명 가운데 양반은 834명, 천인 7명, 중인 5명 순이었으며 양인은 없었다. 3등공신 1,430명 중 양반은 1,351명이었고 중인 66명, 양인 9명, 천인은 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佐翼原從功臣 중 身分別 分析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80	2,265	96.2
	2等	834		
	3等	1,351		
中人	1等	0	71	3.0
	2等	5		
	3等	66		
良人	1等	0	9	0.4
	2等	0		
	3等	9		
賤人	1等	0	11	0.4
	2等	7		
	3等	4		
合計		2,356	100.0	

〈표 22〉 等級別 身分 分析

	1等	2等	3等	合計
兩班	80	834	1,351	2,265
中人	0	5	66	71
良人	0	0	9	9
賤人	0	7	4	11
合計	80	846	1,430	2,356

5. 結論

이 연구는 세조 4(1458)년 좌익원종공신에게 발급된 『좌익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현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익원종공신녹권』은 세조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 2,356명(1등 80명, 2등 836명, 3등 1,430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세조 4(1458)년에 반사한 공신증명서이다.

둘째, 『좌익원종공신녹권』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1권, 규장각에 1권 그리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2권이 전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본 중 1권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셋째, 『좌익원종공신녹권』은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으로 이조에서 발급하였으며, 조선 초기 고서의 주요한 특징인 사주단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吏曹之印'의 인장이 권수제면과 권말 부분 2곳에 주인(朱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좌익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권수는 녹권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 및 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말에서는 녹권 발급에 관여한 구성원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좌익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

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295개의 직함에 모두 2,356명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각 등급별로 분석해보면, 1등은 46개의 직함에 모두 80명이며 상호군 9명, 첨지중추 7명, 사직 6명 순이었다. 2등은 170개의 직함에 모두 846명으로 진의부의 91명, 수의부의 55명, 사정 47명의 순으로 기재되었다. 3등은 1,430명의 공신들이 188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호군 105명, 주부 71명, 부사직 63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문관이 무관보다 그 수는 많았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문·무관이 고르게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좌익원종공신들을 신분별로 분석한 결과, 양반 2,265명, 중인 71명, 양인 9명, 천인이 11명으로 양반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해보면 양반은 호군 127명, 사정 111명, 진의부의 96명 등의 순이며, 중인은 지인 31명, 영사(令史) 21명, 전악(典樂) 7명 순이었다. 양인은 이악령·역자·직률 각각 2명 순이었고, 천인은 노 10명, 내자노 1명이 있었다.

일곱째,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신분별로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1등은 양반만 80명이었고, 2등은 양반 834명, 천인 7명, 중인 5명 순이었다. 3등은 양반 1,351명, 중인 66명, 양인 9명, 천인 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신분은 양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발급 대상자는 양반뿐 만 아니라, 중인과 양인, 그리고 심지어는 천인까지도 포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인 이하의 천인 계층까지는 녹권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

라는 편협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후 다른 공신녹권의 사례

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공신의 녹훈 사실은 물론 신분사 연구에 있어서도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古典資料

- 『經國大典』.
『朝鮮王朝實錄』.
『佐翼原從功臣錄券』.

2. 單行本

- 신명호. 2002.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李成茂. 1995.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一潮閣.
장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千惠奉. 1993.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_____. 2006.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4.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永愚. 1997.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3. 論文

- 노기준. 2008. 振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39: 169-200.
朴文烈. 2005. 平陵君 申景行 平難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31: 185-209.

李成茂. 1976.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13: 173-191.

鄭杜熙. 1981. 朝鮮 世祖-成宗期의 功臣研究. 「震壇學報」, 51: 131-181.

崔承熙. 1998.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22: 11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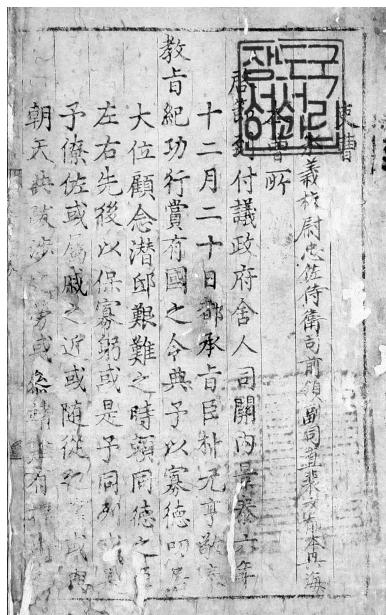
4. 學位論文

- 林基榮. 2002. 壬辰倭亂 直後 賦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진나영. 2008.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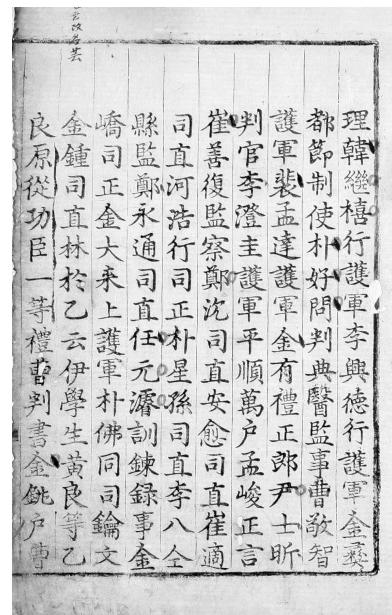
5. Web

- 관직명 사전. [2008.09.12].
〈http://gate.dbmedia.co.kr/cau/korea.asp?url_name=관직명사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제. [2008.05.09].
〈<http://kyuganggak.snu.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08.11.01].
〈<http://people.aks.ac.k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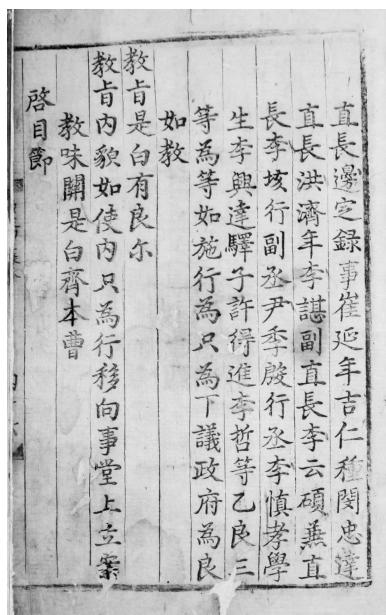
〈附錄〉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影(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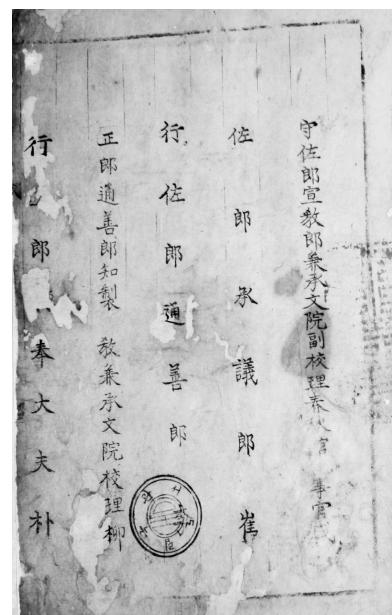
〈권수제면〉



〈등급이 바뀌는 면〉



〈포상규정 및 특전이 기재된 면〉



〈녹권의 발급기관·구성원이 기재된 면〉

